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표 2014년 6월 4일(수)

년	월	일	D-day	주요선거일정	선거운동 방법		정당활동 및 비례대표선거 운동 방법				기간별 주요제한 및 금지사항		
2013	12월	6(금)	D-180	선거일전 180일 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주요제한 및 금지사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정당·언론사·정기간행물사업자·인터넷언론사 등은 제외)	상시선거부정감시단 구성 및 운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각10명이내	**정책개발또는 인지도측정을 위한여론조사** ❶국회의원및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또는예비후보자가선거구민의연론과의견을의정활동에반영하거나정책개발을위한목적으로ARS시스템을이용하여본인의'명의또는'육성'으로제한된선거구민을대상으로한정책여론조사(표본수 1천명) ❷제한된 선거구민 (표본수 1천명)을 대상으로 한 1인 만의 인지도 조사도 가능
		23(월)	D-163	전과기록 조회 개시일 (주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금고이상의 범죄 경력									
		31(화)	D-155	인구의 기준일									
2014	1월	15(수)	D-140	인구수 등의 통보(구, 시, 군위원회에)									
		25(토)	D-130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31(금)	D-124	설날									
	2월	4(화)	D-120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시, 도지사,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부 교부신청기간** (예비후보자등록 직후부터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발송 (예비후보자등록직후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3일까지)** 발송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신고, 우편발송 후 2일까지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제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개시일 (선거일 후 30일 까지)					
		21(금)	D-10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시, 도의원, 구, 시의원 및 시장, 구청장의 선거)									
	3월	1(토)	D-95										
		6(목)	D-90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등록 신청전까지)	각급선관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			**당원집회개최신고(개최일전일까지)선거일전90일부터선거일전 30일까지 개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당원집회** ❶정당의 사무소당원연수시설에서개최하는당원집회(정당선거사무소포함) ❷중앙당대표자가참석하는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이상의 지역책임자급간부회의 [illegible] ❸시·도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회의 관할 구시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정강·정책 등 방송연설** · 연설기간 : 3월1일 부터 선거개시일 전일까지 · 연설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2회 · 연설시간 : 1회 20분 이내 · 방송연설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한자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 텔레비전 및 라디오 공영방송사 마다 월 1회의 방송 연설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함 (제작비용은 정당이 부담)	**정강·정책등 신문광고** · 광고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 개시일전일까지 · 광고횟수: 70회이내 · 광고규격 : 가로37Cm, 세로 17Cm 이내 · 광고주체 : 중앙당		**선거일90일전부터선거일까지주요제한및금지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와관련한 저서의출판기념회금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방법은 언제든지 가능함) ·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명의의 광고 금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광고 출연금지	
		23(일)	D-7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군의원, 군수선거)									
	4월	5(토)	D-60	언론기관 초청대담, 토론회 개시일									**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요제한 및 금지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투표용지 유사모형 이용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제외)
		6(일)	D-59	후보자 거주요건 기준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있는자.)									
	5월	5(월)	D-30	당원집회 개최 금지 개시일				**당원집회 금지** **—선거일 전30일부터선거일까지** ❶통상적인정당활동을 위한 당직자회의는 언제든지 가능함 ❷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 면접은 언제든지가능함					
		6(화)	D-29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부재자 신고서 발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10(토)	D-25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마감일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신청(5월10일~후보자등록 마감시 까지) 공휴일 포함 매일 09:00~18:00 ●광역단체장, 교육감선거 :1,000인~2,000인 ●기초단체장선거 : 300~500인 ●광역의원선거 : 100~200인 ●기초의원선거 : 50~100인								
		12(월)	D-23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작성 제출수량 등 공고, 통지									
		14(수)	D-2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 공고, 통지(정당후보자에게)									
		15(목)	D-20	후보자 등록(오전9시~오후6시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선거연락소 설치신고 각종신고, 신청서류제출) ◆후원회 등록	투표구 명칭·구역 일괄공고								
		16(금)	D-19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5월16일~20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기간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								
		18(일)	D-17	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19(월)	D-16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마감일									
		20(화)	D-15	선거인명부(부재자 신고 인명부)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21(수)	D-14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 부재자 신고 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2(목)	D-13	선거운동 개시일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 인명부 사본 교부신청 마감일 (구·시·군의 장에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관련정당의 선거운동방법** ❶선거사무소:시도및구시군마다1개소 ❷선거사무관계자 선임관련 시도 선거사무소: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시도안의 구시군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수가 20이하 일 경우 20인 이내) 구,시군선거사무소: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구시군안의 읍면동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❸비례대표후보자명함·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❹어깨띠·모자·점퍼·피켓·수기·표찰·마스코트 등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❺방송연설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구마다 해당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1인이 1회 10회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❻인터넷광고 ❼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SNS선거운동 ❽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❾당사 및 선거사무소 외벽간판, 현판·현수막 게시,선거공보·후보자사진 첩부 가능	선거기간 중에는 정강·정책 방송연설과 신문광고가 전면 금지됨	**선거기간중 당사게시간판·현수막등설치** ❶게재할 수 있는내용: 구호 그 밖에 정당홍보에필요한 사항과 해당당부명및그대표자성명, 해당정당이추천한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 ❷게재할 수 없는 내용: 후보자(입후보자예정자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선거기간 중 주요 제한 및 금지사항**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개최금지 · 야간연설회 등의 개최제한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각종 집회 등의 개최제한 · 행렬·호별방문 등의 제한 · 녹음기 및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23(금)	D-12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 선거벽보 첩부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수 신고 마감일(구·시·군위원회에)							
		24(토)	D-11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구·시·군위원회에)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수 등 공고							
		25(일)	D-10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기관, 시설안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허가 신청 마감일(구,시,군위원회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연락소장이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요청(30인미만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에게)							
		26(월)	D-9	선거인명부 확정,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부재자 선거인무투표 통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부재자투표소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기관·시설안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심사·결정·통지							
		27(화)	D-8	부재자투표소 참관인 신청, 신고 마감일		부재자투표 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 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							
		28(수)	D-7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동봉) 세대별 발송	투표용지 모형공고								
		29(목)	D-6		통합선거인 명부사용부재자투표소(조기투표소)설치 (읍·면·동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선거일전 6일 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30(금)	D-5	조기투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06:00~16:00)	개표소 공고								
		31(토)	D-4										
	6월	1(일)	D-3										
		2(월)	D-2	표참관인 선정, 신고 마감일	투·개표 참관인교육 투·개표참관인 교체신고 투·개표 상황판 제작 및 상황실 설치								
		3(화)	D-1	개표참관인 선정, 신고 마감일									
		4(수)	D-day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06:00~18:00)									
		5(목)	D+1	당선 및 낙서사례(읍,면,동마다 1매씩 당선 및 낙선사례 현수막 첨부가능(13일간)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선축하회·위로회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된 사람에 한하여 식사 및 간단한 주류제공 가능)	선거사무장 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직 가능 게시일						
		16(월)	D+12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제출 마감일									
		17(화)	D+13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마감일									
		19(목)	D+15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선인재산신고서 사본 송부(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24(화)	D+20	정치자금 회계마감일									
	7월	4(금)	D+30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마감일(기탁금 반환 및 공제 명세서 송부)	당선인의 병역사항통보 –병무청장(원본),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11(금)	D+37	정치자금회계 보고서 등 사본·열람기간·장소·사본 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30(수)	D+56	상반기 재·보궐선거일									
	8월	1(금)	D+58	선거비용 보전일									
	12월	4(목)	D+183	선거사무장 등이 된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의간부, 통·리 반의 장의 종전의 직에 복직금지 마감일	선거공소 시효 마감일								

광고1

광고2

광고3

광고4

광고5

광고6

광고7

광고8

광고9

광고10

이 인쇄물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선거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후 선거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